

제5회 세계한국학대회

한일병합의 외교적 과정

그릿트 빠스칼¹

I 머리말

II. 청국과 일본의 평행적 책략과 러일동맹의 판도라 상자.

III. 불가피한 영일동맹의 첫 걸음

IV. 일본의 대 조선 내정 간섭

V. 조선의 일시적 중립화

VI. 일본의 대한 노선과 열강

VII. 39 선 현상 유지

1. 제1차 영일동맹
2. 제1차 한일협정
3. 미일협정.
4. 제2차 영일동맹
5. 러일 강화조약
6. 제2차 한일협정

VIII. 열강대국과의 마지막 협상

1. 불일협정
2. 미일합의각서
3. 제1차 러일협약
4. 미일협정.
5. 간도협약(間島協約)
6. 제2차 러일협약

IX. 맺음말

¹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한불)과 조교수.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일본, 한국과 프랑스 외부자료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의 외교적 전략을 살펴본 글이다. 한국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구체적으로 취한 혁신적인 방식을 감정해 보았다. 그러기 위해 우선 사대관계(事大關係)의 종말로 시작하여 당시의 국제법 개념으로 맺어진 1876년의 조일수호조약(朝日修好條約)의 전후 배경을 추적했다. 그 후 분쟁을 야기시키게 되었던 계기가 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영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의 대립양상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주권상실을 다루었다. 또한 일본이 기존의 식민지 건설의 관례와 달리 열강들의 이해관계의 대립양상을 이용하여 그들과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떻게 한반도의 외교권을 점차적으로 침탈해나갔는지에 관한 정책을 살펴 보았다. 이는 일본이 청국에 이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도, 메이지(明治) 시대 초기부터의 대한(對韓) 근본 전략을 결코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근본적인 대한정책은 3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로는 일본은 한반도로의 개입이 가능한 열강들과 동맹 관계를 맺은 후, 한반도 내 소규모 분쟁을 명분 삼아 궁궐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면서, 한반도 행정이나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려던 고종의 모든 시도를 차단했다. 다시 말해서 대한제국과 윈난(雲南) 신디케이트(Syndicat du Yunnan)가 조인한 차관계약과 러청은행(露淸銀行)의 설립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내 프랑스 정부 등의 개입이 병합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발해만 지역에서의 러불동맹(露佛同盟)과 영국의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영일동맹(英日同盟)을 맺으면서 한반도의 중립화를 확보하기 위해 영국의 영향권 하의 지역에 일본군 개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태평양 해안에서 러시아군의 절대적 우위를 우려하던 영국인론들이 걱정했던 것은 제3차 분쟁의 발발 시 군사적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재정적으로 한반도의 현대화를 가능케 할 만한 프랑스의 자본을 통해 요동반도와 만주 지역 내의 철도망을 넓히는 일과 해당 지역의 광산 발전을 시키려던 러시아 정부의 개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리하여 이토 히로부미(伊藤 博文)는 대한제국의 중립화에 서둘러 착수했다. 하지만 러일전쟁이 일본의 군사적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병합은 5년이나 더 걸렸다. 극동 아시아에서 문호개방 정책의 시각으로 간주된 이 시기에,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일본이 애초에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우선 발칸 제국, 인도변방, 파키스탄과 톤킹(베트남 북부의 중심부) 지역을 비롯하여 필리핀에서 발생한 열강들 간의 영향권을 위한 다툼을 이용하여 그들과 밀약을 맺으면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해당 지역에 일본군개입을 약속했다. 이는 한일합방에 대한 열강들의 동의를 얻어 내려는 수단이었다. 그러다, 1910년 여름, 한반도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이 이번에는 미국인론 쪽에서 다시 언급되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가쓰라 다로(桂 太郎)는 군사적 균형을 위협하고 있던 한국 의병(義兵)의 조직이 강해지기 전에 서둘러 합방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는 동안 일본 총리는 30년 이내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할 거라고 외치던 미국 기자들을 상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답하면서 미국 국민을 안심시키려 시도했다.

핵심어 | 간도조약(間島協約), 과두정(寡頭政), 교정청(校正廳), 내정개혁, 독립, 러일협약, 미일합의각서, 미일협정, 영일동맹, 영토보존, 이용익, 이토 히로부미, 한일협정.

I. 머리말

조선이 문호를 개방한 전후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영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청불 분쟁을 배경으로 청국과 일본외교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권문제를 놓고 다투기 시작할 즈음 조선에서는 정세 혼란의 시대가 열렸다. 한반도의 정세가 어느 정도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마침 일본은 조선의 쌀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백성들은 국내 정세의 안정을 되찾고 일본과의 무역을 제한하라는 목소리를 높였고 때로는 동요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요는 조선의 10 년간의 현상유지를 무로 돌아가게 하면서 일본외교에 조선 왕궁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줌으로써 친 일본 과두정(寡頭政)을 세울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내 청국과 러시아의 이해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던 일본은 표면적으로나마 조선의 독립을 지키는 자세를 취했다. 이는 병합에 대한 야망을 접었다기보다는 이를 훗날로 미루는 쪽을 택한 것이라 풀이된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조선 주재 공사관을 통해 한반도를 감독하는 제도를 설치하려고 했다. 반면에 조선 군주가 선택한 노선은 열강 대국에 이해관계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전략적 협조를 얻어내어 청일 내정간섭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영향권의 균형 요소들이 이와 같이 많아지자 대외 일본외교의 요점은 조선 내 정치 각축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 결과 극동의 안정을 위해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보존하는 가운데 행정감독을 하면서 조선을 중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걸림돌은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한 조선군주였다. 일본의 계략을 앞질러 차단하기 위해 왕권을 다시 세우는 동안 러시아, 미국, 프랑스와 영국 등의 공사관 사이에 항구를 건립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이다. 조선 군주는 열강대국의 재정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관세 중립국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역시 영국과 러시아의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한반도 내 정사, 군사 및 경사 특권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외교적으로 다시금 활기를 띠었다. 조선 황궁의 군사적 점령 아래 보호 제도의 승인을 얻어내고자 한 시도가 황제의 완강한 태도 앞에서 실패하자 일본이 취한 제 2 차 노선은 그를 양위하게 만들고 나서 어린 황태자를 책봉하도록 한 뒤 그의 거처를 일본으로 옮겨, 일본인과 혼인 관계를 맺게 하여, 일본 황가로 취급함과 동시에 한반도를 일본의 대륙 지방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통해 일본이 대한제국에 미친 영향권을 놓고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우위를 확보했다고는 해도 합법적 합병을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메이지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열강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국내 강경파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제법의 틈을 타 한일병합을 강행하려 했다.

II. 청국과 일본의 평행적 책략과 러불동맹의 판도라 상자

청국은 프랑스와 영국의 통치하에 놓여진 월남이나 버마의 사태가 청국 동부 해안을 통해 만주까지 전파되는 것을 피하고자 청국뿐만 아니라 영국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조선 왕실정부에 이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키려 했다. 한편 일본은 대마도 해협

의 지배를 면하도록 조선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며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같은 요새를 일본열도 근처에 두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청국과 일본의 이러한 입장은 중립화된 조선반도를 자신들의 공동 감독하에 둘 수 있는 계락을 세우도록 부채질했다. 그러나 대조선국대법민주국통상조약(大朝鮮國大法民主國通商條約: 1886년 6월 4일)이 승인됨으로써 이러한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이노우에 가오루(井上 馨: 1836~1915)와 이홍장(李鴻章: 1823~1901)은 조선의 군주를 왕위에서 내몰고 그의 어린 조카인 이준용(李俊鎔: 1870~1917)을 옥상에 앉힘으로써 청국과 일본의 영향권에 대한 균형 재구성을 선호하던 대원군에게 섭정을 맡기려는 음모를 꾸며 조선행정을 공동감독하에 넣으려고 했다. 마침 조러육로통상장정(朝露陸路通商章程: 1888년 8월 20일)이 체결됨으로써 러시아는 동북아의 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Aleksei Aleksandrovitch Romanov: 1850~1908)²가 고종을 알현하여 청국이 습격할 시 조선에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³을 한 것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청국과 일본을 견제했음을 알 수 있다.

III. 불가피한 영일동맹의 첫 걸음

청나라가 1894년 6월, 2,460여 명의 군대를 보낸 데 이어 일본이 이틀 안에 약 8,000여 명의 군대를 파병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국과 일본이 군사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은 청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는 이홍장에게 청국과 일본의 공동 감독 하에 조선 내정개혁을 강행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중립화시키자는 제안을 했다⁴. 한편 조선 군주와 열강들은 일본 대표 오오토리 케이수케(大鳥圭介: 1833~1911)와 청국 추차관 위안 스카이(袁世凱: 1859~1916)에게 공동 공문을 보내 청국과 일본 병사들을 동시에 조선영토에서 철수시키라고 강요했다⁵. 그러나 일본 외무대신(1892~1896)인 무쓰 무네미쓰(陸奥 宗光: 1844~1897)는 ‘폭력적 조치’⁶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오오토리에게 조선 내정개혁에 대한 조선 국왕의 승인을 얻어 낼 것을 지시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군사 개입의 가능성을 엿보였다⁷. 그리고 16척의 일본 전함이 조선에 도착하자 오오토리 공사는 조선 정부의 외국 고문관들을 일본 사람으로 바꾸도록

² 알렉산드르 2세(1818~1881)의 4째 아들이며 알렉산드르 3세의 동생으로서 니콜라이 2세의 큰아버지로 이 알현 결과를 러시아황제에게 상세하게 전달되었다고 분석됨.

³ 프랑스 외무부 문서, 조선 주재 프랑스 공화국 공관, 정치국, 극동과, 제33호 문건: 언론들은 조선 내 러시아보호령을 통고한다. 서울에서 이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분위기, 서울발, 1888년12월6일; 고종실록, 23년4월18일, 23년5월3일, 26년7월24일.

⁴ 박일근(朴日根), 근대 한국 관계 영·미·중 외교 자료집(近代韓國關係英·美·中外交資料集), 137쪽, 147쪽, 제315호 문건: 주한 영국 총영사 가드너(Gardner)경이 오코너(O'Connor)경 앞으로 보낸 서한, 서울발, 1894년6월7일(비밀).

⁵ 프랑스 외무부 문서, 조선 주재 프랑스 공화국 공관, 정치국, 서울발, 1894년7월3일자 공문의 별첨 1: 외아문 독판이 모든 외국 대표들에게 보낸 공문 사본(한문으로 쓰여진 원문의 영역본 동봉), 외아문, 서울, 조선, 1894년6월24일; 정무국, 제10호 문건: 외국 대표들이 일본군의 제물포 외국 조계 점령에 대해 항의, 서울발, 1894년6월25일; 서울발, 1894년6월25일 정치공문 제10호 첨부1: 미국, 러시아, 프랑스 대표가 일본 공사 오오토리씨에게 보낸 공동공문 사본; 제11호 공문: 조선 국왕이 대표들에게 알선 요청, 서울발, 1894년7월3일.

⁶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30205400호 문서: 동학당 변란의 한국 보호에 관한 일청 교섭 관계; 제B03050308100호 문서: 한국 내정개혁에 관한 교섭.

⁷ 고종실록, 31년6월21일;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30205400호 문서: 동학당 변란의 한국 보호에 관한 일청 교섭 관계.

지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국왕에게 5일 안에 내정개혁에 부응할 것을 강요했다. 한편 일본 공사는 외아문 독판에게 공문(7월20일자)을 보내 지금까지 청국과 체결한 모든 협정을 즉각 파기할 것을 조선정부에 요구했다⁸. 5일째가 되던 날, 오오토리는 경복궁의 군사적 점령을 명한 가운데 조선 국왕을 감금한 상태에서 갑신정변의 주모자를 귀국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새 내각을 구성하도록 했다. 일본의 군사적 개입에 이어 영국은 불평등 조약에 대한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내놓았고, 그 결과⁹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1841~1909)에게 영국과의 동맹은 불가피한 듯 보였다.

IV. 일본의 대 조선 내정 간섭

러시아가 일본이 조선에 보호령을 내리기 위해 계쟁(係爭)을 일으킨 것이라고 아예 고발(1894년7월27일)을 하고 나서자¹⁰ 영국외무성은 러시아 외무성과 협상 중이던 일본에 조선의 ‘독립’을 ‘영토보존(領土保存)¹¹’의 각도에서 제안하라는 충고를 했다. 마침 공동이 아닌 단독 내정개혁에 친일파 내각을 구성하면 청나라로서는 전쟁을 선언(1894년8월1일¹²)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일본 정부는 청나라가 전쟁의 책임을 지게 되자 일본 공사로 하여금 외부대신 김윤식(金允植: 1835년~1922년)을 위협하여 조선을 일본 통치 하에 놓게 될 조일맹약(朝日盟約)을 조인하게 만들었다¹³. 이토 히로부미가 세웠던 계획대로 일본의 다음 단계는 조선정부를 대원군에게 맡기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권을 어느 정도 다시 장악한 대원군은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는 백성의 비판으로 인해 본인의 세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자 왕권을 훼손시키는 내정개혁을 고발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박영효(朴泳孝: 1861~1939) 등으로 하여금 내정개혁 계획을 추진토록 부산에 주둔시킨 병사를 서울로 파병하기로 했다¹⁴.

V. 조선의 일시적 중립화

조선 주재 러시아와 미국 대표는 조일맹약에 의해 여러 차례에 언급되었던 영토보존

⁸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30206300호 문서: 동학당 변란의 한국 보호에 관한 일청 교섭 관계; 프랑스 외무부 문서, 조선 주재 프랑스 공화국 공관, 정치국, 제16호 문건: 일본 요구로 조선이 청국과의 모든 협정 파기, 서울발, 1894년8월25일.

⁹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30206200호 문서: 동학당 변란의 제한국 보호에 관한 일청교섭 관계; 박일근, 근대한국 관계 영미중 외교자료집, 137쪽, 제303호 문건: 하야시(Hayashi)씨가 빠제(Paget) 앞으로 보낸 서한 (비밀).

¹⁰ 프랑스 외무부 문서, 조선 주재 프랑스 공화국 공관, 정치국, 극동과, 제25호 문건: 일본인 통치하의 조선 내정 개혁, 서울발, 1894년11월20일.

¹¹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30205500호 문서: 동학당 변란의 한국 보호에 관한 일청교섭 관계; 제B03030205400호 문서: 동학당 변란의 한국 보호에 관한 일청교섭 관계.

¹²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50308600호 문서: 日清交渉一件.

¹³ 일본국립공문서관, 제A01200762500호 문서: 일조맹약;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 1894년, 제174호 문건: 일조맹약; 고종실록, 31년7월22일.

¹⁴ 프랑스 외무부 문서, 조선 주재 프랑스 공화국 공관, 정치국, 극동과, 제1호 문건: 대 조선왕의 일본대표 대책, 1895년1월20일; 일본의무성, 제25호 문건: 일본인 통치하의 한국 내정개혁, 서울발, 1894년11월20일;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50308600호 문서: 한국 내정 개혁에 관한 교섭; 고종실록, 31년7월20.

에 관한 약속을 어긴 일본 대표에게 일본 병사들은 조선 왕가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1894년9월5일자)를 했다¹⁵. 반면에 요동반도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승리로 쇠약해진 청국과 러시아의 압력이 가해진 상황을 고려한 조선 주재 영국 대표 힐리어(Walter Hillier ; 재류기간 : 1889-1896)는 열강에게 청일전쟁에 개입하여 조선 독립을 공동 감독하에 둘 것을 제안했다. 한편 조선인들은 국왕의 권력을 빼앗고 일본에 매수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비난하면서 기무처가 내린 결정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시점에 지방에서는 왕권 수호를 위한 봉기가 일기도 했다. 대원군마저도 일본 노선의 순순한 앞잡이가 되기는커녕 조선국왕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에 협조했기에 오오토리는 맡았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겠다는 공문(1894년10월17일)을 일본 외무성에 보내면서 대 조선 정책을 신중히 재개편 할 것을 요청했다¹⁶.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는 1875년부터 이 정책의 주역인 일본 내무 대신 이노우에에게 서울 주재 공사 직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극동의 균형을 위협하는 조선의 내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내정개혁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열강 대표들을 납득시키게끔 했다¹⁷. 일본의 논리가 조선의 ‘독립과 자주’보호의 틀을 확장하여 ‘극동의 평화와 조선 국민의 복지’에 목표를 둔 것으로 바뀐 근본적인 시점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일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한일병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의 대한 정책은 조선과 같은 문화권에 속한 이웃 나라로서 동북 아시아의 안정과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보이려는 데 있었다.

VI. 일본의 대한 노선과 열강

이노우에가 조선의 중립화 이상의 야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선 왕권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일에 착수하면서 대원군이 조정에는 간섭하지 못하도록 군국기무처의 폐지 조치를 취하자 조선군주는 각 부처의 인사이동을 지시하면서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관리 몇 명을 협관으로 임명했다. 이노우에는 일본의 내정간섭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고종을 알현(12월 17일자)한 자리에서 신랄한 항의를 표한 끝에 고종이 신병인도(引渡)를 강요해 왔던 갑신정변의 주동자, 박영효와 서광범(徐光範: 1859년~?)을 각각 내무대신과 법무대신에 임명하는 조건 하에 군국기무처의 폐지를 얻어내는 한편, 열강과는 조선의 영토 보존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극동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들의 적대적 이해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일본 통치 하의 조선 중립화를 제안하며 접촉했다¹⁸. 당시 영국과 일본 대표 간의 회담기록에 일본은 철수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 명기돼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은 군사적 압력을 이용해 홍범 14 조(洪範十四條)를 제정하는

¹⁵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50312700호 문서: 임오년의 변 때 망명한 조선인을 해국정부에 등용 방안.

¹⁶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50308700호 문서: 한국 내정 개혁에 관한 교섭; 제B03050312700호 문서: 임오년의 변 때 망명한 조선인을 해국 정부에 등용 방안; 박일근, 근대한국관계 영미중 외교자료집, 456-457쪽, 제455호 문건의 제2 첨부: 주한 총영사 힐리어(Hillier)씨가 오코너(O'Connor)씨 앞으로 보낸 서한, 서울발, 1894년11월1일; 466쪽, 제12호 문건의 제2 첨부: 주한 총영사 힐리어(Hillier)씨가 오코너(O'Connor)씨 앞으로 보낸 서한, 서울발, 1894년10월17일.

¹⁷ 박일근, 근대한국관계 영미중 외교자료집, 454-455쪽, 제455호 문건의 제1 첨부 문서: 총영사가 김버리(Kimberley)백작 앞으로 보낸 서한, 서울발, 1895년10월31일.

¹⁸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50311200호 문서: 조선국왕 겸 제대신에게 내정개혁을 권고.

망명자가 종묘에 자주독립을 서고(誓告)하는 자리에 조선국왕을 일본 경찰의 ‘호위’ 하에 참석하도록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¹⁹. 제 5 대 외무(1879~1885)경에 이어 초대 외무대신(1885~1887)의 자격으로 일본의 대 조선 정책을 이끈 이노우에 가오루는 1880 년대에 세웠던 계획을 살려 중립화된 조선을 일본의 군사적 통치 하에 놓은 데 성공한 것이다.

VII. 39선 현상 유지

일본이 계략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다음 단계인 보호 제도를 강행하는 것이 결국 불가능해졌다. 이 무렵(1895 년 3 월 22 일)에 조선 국왕은 보호령에 호의적 성향을 보여 준 서울 주재 영국 대표에게 사자(使者)를 보내 이노우에와 박영효가 철도(1894 년 8 월 20 일 체결된 양국간 '잠정합동조관 (暫定合同條款)'의 결과, 일본은 경부선(京釜線)과 경인선(京仁線)의 철도부설권을 보유하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전선(電線)과 우정(郵政)에 관한 독점권을 일본에 제공하는 계약을 압력하에 얻으려 한다고 고발하면서 러시아, 프랑스와 독일이 일본을 상대로 해상 작전을 펼칠 경우 영국이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는 조건으로 조선 내 일본이 차지하던 특권을 주기로 약속했다²⁰. 일본이 독단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다고 해석한 열강들은 일본이 사할린 섬에서부터 타이완 해협(臺灣海峽)까지 뻗은 전략적 지역을 통제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조선 국왕에게 충성을 바친 신하들의 직책을 역모자에게 제공한 일본 공사에게 항의의 뜻을 표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조약을 추진한 결과, 조약(下關係約, 馬關係約)이 체결되고 이로 말미암아 조선은 청국과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자주독립국으로 인정(제 1 조)받게 되고, 조선 영토에 주둔하던 청일 군대를 동시에 철수(제 7 조)하기로 했다. 결국 이노우에도 선임자와 마찬가지로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채 물러 서자 박영효는 다시금 반역 음모자로 일본으로 망명했고,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 1849-1940)가 무쓰 무네미쓰의 뒤를 이었지만 대 조선 정책의 노선을 바꾸지는 않았다.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1847~1926)육군 중장을 임명한 사이온지는 러시아에 접근하여 조선 정부를 ‘변덕스러운²¹’정권으로 소개하며 러시아 방패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주 일본 러시아 공사 미하일 히트로보(Mikhail Alexandrovich Hitrovo)는 왕권 복고와 함께 조선의 내정 질서 역시 회복되었으므로 일본 절차에 항의를

¹⁹ 박일근, 근대한국관계 영·미·중 외교자료집, 477-478쪽, 제37호 문건의 제3 첨부 문서: 주한 총영사 힐리어(Hillier)씨가 오코너(O'Connor)씨 앞으로 보낸 서한, 서울발, 1894년12월5일 ; 프랑스 외무부문서, 조선 주재 프랑스 공화국 공관, 서울발 1895년1월20일 정치공문 제1호 첨부: 1895년1월7일 조선 왕이 종묘에서 한 서고문(1월8일 관보)[홍법14조].

²⁰ 박일근, 근대한국관계 영미중 외교자료집, p. 530, 제328호 문건: 주한 총영사 힐리어(Hillier)씨가 오코너(O'Connor)씨 앞으로 보낸 서한, 서울발, 1895년3월22일(비밀); 536쪽, 제415호 공문의 첨부1: 주 한 총영사 힐리어(Hillier)씨가 오코너(O'Connor)씨 앞으로 보낸 서한, 서울발, 1895년4월13일(비밀); 일본국립공문서관, 제 B04010720200호 문서: 한국차관 관계; 제B03041165200호 문서: 요동반도 반환과 로블독의 삼국간섭; 제 B03041165300호 문서: 요동반도 반환과 로블독의 삼국간섭.

²¹ 일본의무성, 외교문서, 제7권, 464~466쪽, 제333호 문건: 조선 처리에 관한 회답 건, 1895년7월11일.

표하면서 조선 독립과 자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약속을 회상시켰다²². 한편 경북궁 주위의 조선 측 군사시설을 점령하고 무기를 압수함으로써 조선군의 무장 해제를 강행하면서 일본이 훈련시킨 훈련대(訓練隊)에 일본측 첩보원들이 잠입된 사실을 파악한 조선 국왕이 민씨척족 세력과 친로파(親露派)의 옹호 하에 훈련대와는 별도로 창설한 시위대(侍衛隊)를 미국장교의 지도로 편성시켜 훈련대를 해산(1895년 10월 7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일본 공사는 사이온지에게 이 조치가 대 조선 정책을 망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후 공사관 병력과 일본인 자객들을 동원하여 궁궐(10월 8일)에 진입하여 왕후를 살해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세자와 세자빈이 부상을 입고 국왕은 다시 감금에 처해졌다²³. 이러한 출병을 감행한 일본 정부는 사이온지가 주장한 조선의 '변덕스러운' 정세를 구실로 갑신정변의 주모자들 중 살아 남은 망명자를 주축으로 하여 친일 내각을 부활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청국과는 어느 정도로, 러시아와는 특히 좋은 관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요동반도와 봉천 반환에 대한 협상(1895년 11월 8일)을 하는 동안 신임 일본 공사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1855~1911)로 하여금 조선의 '변덕스러운' 정세를 증명토록 왕후 폐비령을 내리게 하면서 표면적으로 조선의 영토보존을 수호하기 위함인 듯 조직한 친일 과두정(寡頭政)에 의해 자주독립을 다시 서고(誓告)하게 했다. 왕후처럼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조선 국왕은 궁궐에서 탈출하는 데에 성공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자마자 일본 공사와 협력한 모든 대신들을 역모 죄로 체포하며 훈련대의 해산을 단행, 일본 교관을 해임하고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 군대의 철수를 강요했다²⁴.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러시아 황실 정부와 차관과 신식 군대 교관 파견 문제에 관한 협상을 벌인 나머지 러시아 외무 장관 알락세이 로바노프(Alexey Borisovich Lobanov-Rostovskii: 1824-1896)는 이홍장과 로청밀약「露清密約²⁵」(李鴻章-로바노프協定、清俄密約, 防禦同盟條約이라고도 함)을 맺으면서 일본의 조선과 만주 진출을 저지하기로 약속했다(제 1, 3 과 5 조). 3일 후, 청국의 지지를 얻은 러시아 외무 장관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 有朋: 1838~1922)와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일하게 조선에서의 주병권(駐兵權) 및 조선으로의 출병권(제 2 조)을 갖는다는 사항을 비밀리에 협상했으나 조선 왕정이 이러한 이면적 러시아의 정책에 눈을 뜨게 되자 러시아의 영향력은 쇠약해졌고 조선국왕은 환궁(1897년 2월 20일)했다. 러시아 제국은 청나라와 협상을 추진해 1898년 3월 15일 협정(Li-Pavlov Convention)을 조인함에 따라 요동 반도에서부터 대한의 북쪽 지방 39 선까지 이어진 일대의 개발에 참여하여 동청철도선이 남만주 횡단철도에

²² 일본외무성, 외교문서, 제7권, 480~482쪽, 제347호 문건: 조선의 사태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훈령에 대한 선언, 1895년7월31일.

²³ 고종실록, 32년8월20일; 일본외무성, 외교문서, 제7권, 464쪽, 제332호 문건: 박사건 관계 정보 보고 건, 1895년7월11일; 제7권, 493~394쪽, 제358호 문건: 왕비 살해 사변에 일본인 가입의 유무 회답 건, 1895년10월9일.

²⁴ 박일근, 근대한국관계 영미중 외교자료집, 638쪽, 제111호 문건: 주 한 총영사 힐리어(Hillier)씨가 살리스버리(Salisbury)후작 앞으로 보낸 서한, 서울발, 1895년10월17일(12월9일 수령); 654-655쪽, 제128호 문건의 제1호 첨부 문서: 오코너(O'Connor)씨의 서한, 1895년10월28일;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50313800호 문서: 한국왕 로공사관에 파견함; 제B03050313400호 문서: 한국왕 로공사관에 파견함; 한국 정치 외교사학회, 한불외교사(1886-1986), 279쪽.

²⁵ 일본국립공문서관, 제A03023738700호 문서: 만주몽골 문제관계의 중요 조약; 제B03030297700호 문서: 로청 동맹조약(Treaty of Alliance between China and Russia) - 1896년6월3일.

이어지도록 남만주철도의 부설권(제 1,2 & 3 조)을 얻어냄으로써 다렌항과 압록강의 하구(河口)를 연결(제 8 & 9 조)할 수 있었고 이와 아울러 여순항과 다렌항에 육해군 기지를 설치(제 4 & 7 조)할 수 있게 됐다²⁶.

1. 제 1 차 영일동맹

러시아의 기지계획이 요동반도로 전환됨에 따라 발해만이 러시아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되자 영국은 일본과 협상하는 길을 선택했다. 따라서 니시 토쿠지로(西 德二郎: 1847~1912; 제 12·13 대 일본외무성 대신: 1897 - 1898)남작과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 로젠(Roman Romanovitch Rosen: 1847~1921)남작은 제 3 차 일로협정(第 3 次日露協定; 니시(西)·로젠協定)을 체결(1898년 4월 25일자로)하여 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제 1 조)을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제 2 조)을 했다. 이는 이해 당사국인 조선의 독립과 자주를 도외시켰음은 물론이거니와 만국공법을 무시한 비밀 조항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의화단란(義和團亂)이 일어날 때까지 유지됐다. 러시아는 의화단란을 구실로 만주의 무장 점령을 고려하여 1901년 1월 7일, 열강의 공동보증 하에 대한제국의 중립화 안을 제안했다. 당시 청국 주재 일본 공사로 발령된 고무라는 만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대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만주의 중립화와 한반도 내 러일 세력 범위의 분할까지 주장했다²⁷. 대한제국을 선포한 조선 군주는 러시아와 거리를 두어 탁지부협판(度支部協辦) 이용익(李容翊: 1854~1907)을 시켜 러청은행이 아닌 윈난 신디케이트(Syndicat du Yunnan)와 550000엔의 차관계약(1901년 5월 21일)을 맺어 평양 일대의 광산 개발(제 1 조)을 추진토록 지시했다²⁸. 그러자 일본 언론은 원정의 파견을 언급했고, 영국공사는 황제와의 알현 시에 계약의 폐지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공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만주 점령을 인정하는 대신, 일본에 의한 대한제국 점령을 거래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나서 러시아를 방문하여 협상(1901년 12월 6일)을 벌였고, 영국 대표 조던(Sir John Newell Jordan: 1852~1925)은 대한황제를 알현(1902년 1월 16일)하여 본 계약의 폐지요청을 거듭하였고 다음 날엔 러시아 대표 파블로프(Alexandre Ivanovich Pavlow)를 찾아가 러시아는 차관계약에 반대한다는 단언을 얻어냈다²⁹. 이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영국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 타다수(林 董: 1850~1913)가 영국 총리

²⁶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41179400호 문서: 러시아의 여순(旅順), 대련(大連) 조차관계; 제B03041179500호 문서: 러시아의 여순, 대련 조차관계; 제B03041179600호 문서: 러시아의 여순, 대련 조차 관계; 제B03041179700호 문서: 러시아의 여순, 대련 조차 관계; 제B03041179800호 문서: 러시아의 여순, 대련 조차 관계; 제B03041179900호 문서: 러시아의 여순, 대련 조차 관계; 제B03041180000호 문서: 러시아의 여순, 대련 조차 관계; 제B03041180100호 문서: 러시아의 여순, 대련 조차 관계; 러시아 제국의 외무성 자료, 제1권, 331~339쪽.

²⁷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41191300호 문서: 한국의 영구 중립에 관한 러시아의 제의.

²⁸ 프랑스 외무부 문서, 대한 주재 프랑스 광화국 공관, 영사와 상업업무국, 상업과, 제4호 문건: 윈난 신디케이트 대표 카자리스씨의 대한 임무, 서울발, 1901년5월3일; 영국 주재 프랑스 공화국 영사관, 영사와 상업업무과: 한국차관, 런던발, 1901년4월20일;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4010933800호 문서: 한국의 영구 중립에 관한 러시아의 제의; 제B04010934000호& 제B04010934100호 문서: 마산포, 삼랑진 간 철도부설; 전정해, 대한제국의 산업화 시책 연구, 2003, 127쪽.

²⁹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4010721800호 문서: 한국 차관 관계.

랜스다운(Henry Charles Keith Petty-Fitzmaurice Lansdowne: 1845~1927)과 영일협약(日英協約; 第一回日英同盟協約: 1902년 1월 30일)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대한제국에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제 3국으로 인해 그 이익이 침해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제 1 조)과 대한제국에 대해 교전을 벌일 시 동맹국이 참전(제 3 조)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³⁰.

2. 제 1 차 한일협정

영국이 6월에 윈난 신디케이트와의 계약의 폐지를 얻어내자 일본은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대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선권을 얻어내기 위한 만환교환론(滿韓交換論)을 러시아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황제는 프랑스 대통령에게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대한 정부가 국외중립(1904년 1월 21일)³¹을 선언한지 며칠 후(1904년 2월 8일) 뤼순항을 기습 공격한 다음 날, 일본은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후 서울에 진주하게 된 이튿날 선전포고를 발령했다. 전세가 우세해 보이자 1904년 2월 23일자로 서울 주재 일본 공사 하야시 곤수케(林權助: 1806~1868)는 황제를 다시 감금에 처하고 친일 내각을 구성하였다. 또한 내각의 일원 중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928)이 일본 공사로부터 1만 엔을 받고 한일 공수동맹(攻守同盟)인 한일의정서에 조인함에 따라 일본은 내정개혁(제 1 조)을 부활시켜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보존(제 3 조)을 구실로 한국방위를 맡게 되었기에 제 3국의 침략으로 인해 대한제국 내 일본의 이해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승인 없이는 제 3국과 협약(제 4 & 5 조)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³². 3월 17일, 추밀원(樞密院)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특과 대신으로 대한제국에 건너와 의정서를 강행, 대한제국 재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였고 군부고문(軍部顧問), 경무고문(警務顧問) 참여관(參與官) 등에 일본인을 임명하면서 대한제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³³.

3. 미일협정

프랑스와 러시아는 공동 공문(1905년 3월 17일자로)을 통해 일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³⁴. 5월 27일, 러시아 발틱함대가 일본 해군에 의해 동해 바다

³⁰ 프랑스 외무부 문서, 일본 주재 프랑스 공화국 공관, 일본 주재 대신 뒤마유(Dubail)씨가 델카제(Delcassé)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도쿄발, 1901년 4월 28일; 대한 주재 프랑스 공관, 영사와 상업업무국, 상업과, 제 8호 공문: 대한 내카자리스(Cazalis)씨의 임무에 관하여(비밀), 서울발, 1901년 6월 3일.

³¹ 국사편찬위원회, 교문서, 제 GF 1174호 [10-88-11], 광무 10년 1월...일: 대법민주국앞으로 보낸 대한제국 황제의 밀서.

³² 고종실록, 44년 2월 23일.

³³ 고종실록, 41년 8월 22일, 10월 14일; 일본국립공문서관, 제 A04010081700호 문서: 대장성(大藏省) 주세국장 메가타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郎) 한국정부와의 재정고문 용병 계약 조인.

³⁴ 일본국립공문서관, 제 B03030410900호 문서: 한국의 차병과 동국 황제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에 관한 한제 대 러

속으로 주장되는 사이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필리핀 초대 총독 테프트(William Howard Taft: 1857~1930) 육군 장관을 도쿄에 파견하여 역시 군인이자 일본 총리대신(1901~1906)인 가쓰라 다로(桂 太郎: 1848~1913)와 비밀회담을 열어 밀약을 체결(1905년 7월27일자)하였다. 따라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제1조)를 일본이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은 일본의 대한 '보호와 통치'를 인정 (제2조)하였고 이에 뒤이어 영일동맹에 가담하여 극동 침략에서의 미, 일, 영 삼국의 공동 행동을 규정했다. 이는 조선의 식민지화를 막은 삼국간섭 세력에 맞설 준비를 한 것이다.

4. 제2차 영일동맹

주영 일본 공사이자 제21대 외무대신(1906~ 1908) 하야시 타다수(林董: 1850~1913)의 협상과 러시아의 패배는 제2차 영일동맹(英日協約: 영일협약)이 승인(1905년8월12일자)되는 것으로 끝나무리되면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정사, 군사 및 경사에 대해 탁월한 이익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도감리나 보존의 조치를 대한제국에서 취할 수 있는 권리(제3조)를 영국으로부터 인정 받았고, 러일전쟁 중 어떠한 열강(프랑스)이라도 일본을 상대로 교전을 벌일 경우 영국은 일본을 원조하기로 약속했다(제6조)³⁵.

5. 러일 강화조약

전쟁에 승리를 거둔 일본이 러시아를 강화협상 테이블에 앉혀 포츠머스 조약(日露講和條約)을 조인(1905년9월5일자)함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제2차 영일동맹의 제3조와 동일하게 대한제국 내 일본의 정사, 군사 및 경사에 대해 탁월한 이익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지도감리나 보존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에 동의(제2조)를 얻어냈다.

6. 제2차 한일협정

이토 히로부미는 서울(1905년11월10일)로 돌아와 다음 날인 11월 10일 일왕의 친서를 고종 황제에게 바쳤다. 이 무렵 조선헌궁은 주 조선 일본군 사령관이자 제2대 조선총독(1916년~1919년)으로 임명될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 好道: 1850 ~1924)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지원받아 서울을 점령하여 궁궐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있었다. 그 사이 1905년 11월 11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916)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내각 일원들에게 보호령을 지지한다는 선고를 하도록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15일에 다시금 고종 황제에게 한일협약

시아 공사간의 행동 보고.

³⁵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제1권, 377쪽, 제224호 전보: 영일동맹, 1905년9월15일 ; 일본국립공문서관, 제 A01200226300호 문서: 일영 협약을 개정함, 明治 3 8年(1905) 0 8 月 1 1 日.

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황제는 조약 승인을 거부하면서 일왕이 전쟁선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제1차 한일협정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거듭 거부했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11월17일 회의실까지 자신을 호위한 일본 병사들을 이끌어 직접 메모용지와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수십 명에 이르는 일본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궁내로 들어가 하세가와를 시켜 외무부의 도장을 가져오게 하여 조약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했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이 제2차 한일협약에 따라 이토가 본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의 관리(제3 & 4조)와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일본 외무성을 통해 감리와 지휘할 뿐만 아니라 타국 간에 현존했던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책임을 지게 되면서 대한 제국은 일본 정부의 중개 없이는 어떠한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조약이나 약속도 할 수 없게(제1 & 2 조) 되었다³⁶.

VIII. 열강대국과의 마지막 협상

1. 불일협정

대한 황제는 서울 주재 프랑스 대표에게 보낸 친서³⁷를 통해 제2차 한일협정의 불법성을 국제 사회에 고발했으나 프랑스 외교는 이미 5월부터 일본과 회담을 열고 있었기에 주한 프랑스 공사에게 대한황제와의 협력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본이 프랑스 정부와 회담을 열어 극동 내의 영향권에 대해, 즉 한국과 인도차이나에서의 상호 이득의 우위 문제에 대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토는 자신의 대한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 주재 외교단을 상대로 『Administrative Reforms in Korea』(대한행정개혁)이란 팸플릿을 간행하면서 “대한 국민의 복지와 아시아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대한에서의 일본의 작업을 정당화했다³⁸. 대한제국 황제의 대표단이 만국평화회의에 항의하러 헤이그에 도착한 당일인 1907년 6월 10일에 프랑스와 일본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보호령이 인정된 셈이었다³⁹.

³⁶ 일본국립공문서관, 제A03020645800호 문서: 명치38년 칙령 제240호, 한국에 통감부(統監府)와 이사청(理事廳)을 설치 건, 명치38년11월22일; 고종실록, 광무9년10월21일, 11월17과 27일.

³⁷ 프랑스 외무부문서, 일본 보호령 하의 내무(1907-1908), 정치국, 제2문서: 보호령에 관한 항의, 서울발, 1907년 1월23일건.

³⁸ 프랑스 외무부 문서, 보호령하의 내무(1907년-1908년), 주 한 프랑스 공화국 공관, 정치국, 제9호 문서: 『Administrative reforms in Korea』이란 제목으로 책자 두부 발송, 서울발, 1907년5월22일.

³⁹ 일본국립공문서관, 제A01200018100호 문서: 日仏協約案; 프랑스 외무부 문서, 일본, 제20권, 152-152 쪽(프랑스공화국 관보인 『Journal Officiel』의 1907년6월22일자 발췌).

2. 미일합의각서

며칠 후인 1907년 7월 27일, 일본과의 회동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는 일본과 미국간의 협조가 있을 때 가장 잘 이뤄지리라는 것과 미국처럼 강력하고 일본에 우호적인 나라가 필리핀을 점령하는 것이 일본에 최선임을 주장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1857-1930) 미 육군 장관은 한국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다른 세력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 러일전쟁이 발발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것이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⁴⁰하였다. 이 결과, 1907년 7월 31일에 태프트는 1905년 2월 23일의 한일의정서에 따라 대한제국이 더 이상 일본의 동의 없이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⁴¹.

3. 제 1차 러일협약

미일협상이 벌어진 사이에 모토노 이치로(本野 一郎, 1862-1918) 주러공사와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이즈볼스키(Александр Петрович Извольский, 1856-1919)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공개협정과 비밀협정, 추가 조항까지 조인함으로써 일본은 외부 몽고의 러시아 특수 지위를 존중하기로 약속한 반면에 러시아는 철도문제에 있어 미국과 벌어지는 경쟁으로부터 만주를 보호하기 위해 1907년 7월 30일에 일본과 대한제국 간의 정치적 연대관계를 인정(제 2와 제 3조)하는 밀약을 체결했다⁴². 다시 말해 러시아가 일본의 보호령을 인정한 셈이다.

4. 미일 협정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의 배일이민법으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긴장상황을 악용한 프랑스, 독일과 영국간에 삼두정치가 성립될 것을 두려워했다. 이는 일본에게 동청철도에 대한 부설권과 남부 만주의 광산 및 삼림에 관한 착취권리를 양도하도록 이끌었다. 三国干涉 같은 개입을 피하려 1908년 11월 30일 엘리후 루트(Elihu Root, 1845-1937) 국무장관과 타카기라 코고로(高平 小五郎 1854-1926) 주미 일본 대사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분쟁 발발의 위기에 종지부(제 2와 제 5조)를 찍으면서 영토의 현상을 공식적으로 인식(제 3조)하였고, 청국 내 자유무역 및 상업상 기회균등(제 4조)을 약속했다⁴³.

⁴⁰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2130063100호 문서 : 对欧米列強關係.

⁴¹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375쪽, 제132호 전보: 주 미국 대한공사가 요청한 조원조치에 관한 정보.

⁴²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6150009900호 문서: 第一回日露協約締結一件.

⁴³ 일본국립공문서관, 제A04018135500호 문서: 「루트」高平協約; 제B03030312100호 문서: 日米兩國國民의親善을계 획하기 위한 兩國有力家相互訪問交換.

5. 간도협약(間島協約)

청국 당국이 해당 지역에 개입하는 일에 반대하여, 또한 러시아의 전략적 지원으로 전쟁까지 발발할 경우 대한제국의 진압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보호(치외법권)를 명목으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양국 간의 국경은 두만강으로 결정되었고, 두만강 이북의 간지에 있어서 한국민의 거주를 승인(제 1 과 제 3 조)하였으며,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각지를 개방하도록 4 군데(龍井村: 용정촌, 局子街: 국자가, 頭道溝: 두도구, 百草溝: 백초구)에 일본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제 2 & 4)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기(兵器)와 공문(公文)을 휴대한 자는 일본의 호조(護照) 없이 월경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한국민(의병)의 저항을 저지하는 것과 미국의 호소에 호응하면서 남 만주(길장 철도를 연결남경에 연장함) 철도와 대한제국 철도(회령에서)를 연결(제 6 조)하기 위한 조치였다⁴⁴. 일본은 삼국간섭의 압박 하에 체결한 시모노세키(下關條約)조약으로 인해 상실했던 특권을 복원한 셈이다.

6. 제 2차 러일협약

러시아는 일본이 대형 병영의 건설과 한반도 북부에 포위용 중포(重砲)를 운송하는 것을 우려했다⁴⁵. 러시아 정부는 여러 전선에서 충돌의 위험에 직면하느니 차라리 일본과 협상하는 쪽을 택하려 했지만 1909년 10월 26일에 만주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가 충격을 받고 사망하자 대한제국 독립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없었다. 1910년 7월 4일 이렇게 지연된 제 2차 러일협약이 드디어 체결됨으로써 양국은 만주에 관한 서로의 권익수행에 있어서 해가 될 수도 있을 경쟁을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제 1 조)하며 청국과 체결한 일철의 조약 또는 다른 약정을 토대로 만주의 현상존중을 약속(제 2 조)하고 전기현상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시 양 체약국은 이 현상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에 대해 협정하기 위해 서로 수시협상하기로 했다(제 3 조)⁴⁶. 이에 따라 러시아 개입에 대한 위협성은 없어졌으나 미국언론들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태평양에서 우위를 확고히 할 목적 하에 미국을 희생시키려는 수속을

⁴⁴ 일본국립공문서관, 제A06050090400호 문서: 淸韓國境과 滿洲에 關한 日淸協約.

⁴⁵ 프랑스 외무부 문서, 보호령하의 내무사안 1909-1910, 제17호 문서 : 코코프초프(Kokovtsoff)의 만주 순방, 동청 철도, 대한제국 내 일본인(극비), 상트 페테르부르크발, 1909년10월15일 ; 제77호 문서 : 한국민 반란에 관하여, 서울발, 1909년11월6일.

⁴⁶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6150010500호 문서: 日露協商.

밧았다고 고발하고 나섰고, 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본총리인 가쓰라 다로(桂 太郎 1848 - 1913)는 긴 발표 끝에 «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⁴⁷ »라고 지적했다. 결국 陸軍大將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 正毅, 1852-1919)백작은 대한제국의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제출한 합병안을 의장의 자격으로 1910년 8월 22일 통과시켰다. 며칠 동안 비밀에 붙여진 이 조약⁴⁸은 공포(제 8 조)되는 29일로부터 유효했다⁴⁹.

X. 맺음 말.

일본은 조선과 맺은 조일수호조규의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어겼으며, 또한 조일맹약의 제1조에 따라 ‘일본이 조선국의 독립자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 나라 병사가 조선 영토에서 철퇴토록 한다’는 조항과, 청일강화조약의 제1조에 의해 ‘조선이 청국과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자주독립국을 인정하는 것’을, 제3차 러일 양국간 협상의 제1조로 ‘대한제국의 주권과 완전한 독립’을, 제1회 일영 동맹협약의 제1조로 ‘양체약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것’을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포츠머스조약의 체결 이후로는 타국과 한국을 언급하는 조약을 맺을 때 “한반도의 독립과 영토보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러일전쟁이 막을 내린 다음부터 일본이 펼친 외교 논리에는 단 두 가지 요소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아시아의 평화와 한국 신민의 안녕”이었다. 열강의 동의를 확보하려 한 일본은 이와 같이 한국의 국권침탈을 정당화시켰다. 그러기 위해 일본은 만국평화회의 의장과 미국 대통령 앞에 직접 나서 대한제국 황제의 사절이 호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움직였다. 일본의 다음 수속은 프랑스와는 영제국의 야망으로부터 통킹 만의 안전 보증을, 영국과는 발해만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지대에서 영국은 러시아의 영토확장으로 부터 안전 확보를, 중국하고 남부 만주에서의 청국의 특권 보유를, 러시아와 동청철도에 대한 러시아의 부설권과 몽골 남부까지의 확장을, 태평양 무역 경로에 미국 진출과, 마지막으로 대만 해협 지역에서 독일의 주장 등을 두고 협상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열강들은 제국의 충돌을 피하는 것에 대외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만국 평화 회의가 끝날 때, 일본이 열강들에게 제공한 영향권에 대한 약속은 대한제국의 운명을 평화의 이름으로 정한 것이다.

⁴⁷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30305600호 문서: 1910년8월3일자 『New York World』 지.

⁴⁸ 프랑스 외무부 문서, 한일병합 후 내무 (1910년-1911년), 상무정치국, 극동과, 제8호 문서: 한국의 정세에 관하여, 서울발, 1910년8월24일.

⁴⁹ 일본국립공문서관, 제B03041226200호 문서:併合條約 (極秘) ; 제A03033073100호 문서: 韓国併合條約.